

상대 거래처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일방적으로 발행시

Q 당사는 거래중인 상대거래처에서 단가 인상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을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상대측의 금액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22.1월부터 3월까지 발행하였고 당사는 부가세 신고시 이를 무시하고 부가세신고(당사는 매월 조기환급신고 업체)를 하였는데 질문인 즉 단가협의를 절충이 되지 않으면 1기 확정 신고기간에도 당사가 지금처럼 대응해도 될런지 여부입니다.

A 공급가액이 다툼이 있는 경우라도 공급자는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우선 신고반영한 뒤, 추후 공급가액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매입자인 귀사의 입장에서도 정상적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이므로 신고반영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지만, 신고에 반영하지 않아도 매입세액이므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부동산 법인의 이월결손금공제 한도

Q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2021년귀속 법인세 신고시 부동산임대업 법인도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이월결손금공제가 100% 가능한지요?

A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대업의 경우 무조건 중소기업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매출과 규모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중소기업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에 해당되면 이월결손금 공제 100% 적용도 가능합니다.

세법상 투자로 처리해야 할 금액 문의

Q 당사는 관계사로 부터 100억원 정도의 설비를 수입할 예정이며, 이와 동시에 설비와 관련된 수선유지부품 4억원(수선유지주기 2~3년), 설비작동을 확인(시운전)에 필요한 원자재도 1억 원 정도 구매할 예정입니다.

이때, 세법상 투자로 처리해야 할 금액에 케이스 별로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설비, 수선유지부품, 시운전자재 동시구매 일괄 인보이스 발행시 세법상 투자로 처리해야 할 금액?
2. 설비, 수선유지부품, 시운전자재 동시구매 별도 인보이스 발행시 세법상 투자로 처리해야 할 금액?
3. 설비, 수선유지부품, 시운전자재 별도구매 별도 인보이스 발행시 세법상 투자로 처리해야 할 금액?(별도구매시 구매시기를 상이하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A 세법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투자'의 범위는 없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시설투자에 범위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특법 제24조는 기계장치 등 사업용유형자산, 기계장치 이외의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사의 경우도 설비와 수선유지부품, 시운전자재 모두 사업용자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지만, 사업용 유형자산에 설비 이외의 수선유지부품 등이 포함되느냐는 명시적 규정은 없으므로 이에대한 최종적 판단은 국세청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회사보유의 오토바이를 직원에게 경매 시 문의

Q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오토바이를 직원들에게 사내경매를 통해 판매하려고 합니다. 장부상 잔존가액보다 낮게 경매를 진행하여 장부가보다 낮은가격으로 직원이 취득할 경우에 세무상 이슈가 있나요?
(장부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해야하는건지?)

A 회사와 직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직원과 거래시에는 시가로 거래해하 세무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시가보다 저가로 매각하여 회사가 손실을 입어 법인세 부담액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시세에 근접한 경매가격이면 타당합니다.